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김부겸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몰·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 코로나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,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 직군별 직무특성을 고려토록 하여 직무 범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, ‘2명 이상 사망수당’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(안 제3조제3항 신설)

별표 1 제2호의 2-1의 각 목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,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질, 위험직무의 종류,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

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

나. 전몰·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, 보훈심사 생략 (안 제8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)

「군인사법」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군인이거나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찰·소방공무원인 경우,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다. ‘2명 이상 사망 수당’ 지급 기준 개선 (안 제23조제3항, 별표 4의2 제2호,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 가목)

‘2명 이상 사망수당’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 대상 사망자 인원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

라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행기관 명확화 (안 제102조의2)
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

마.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선 (안 별표1)

「군인사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위험직무 반영을

통해 신분별 직무수행 범위 구체화 및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별표 1 제2호의 2-1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질, 위험직무의 종류,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제8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된 군인인 경우
- 5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된 경찰·소방공무원인 경우

제23조제3항 중 “제1항제2호에”를 “제1항제2호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2호에”로 한다.

제10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02조”를 “보훈심사위원회와 제102조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2-1의 기준 및 범위란 중 “직무수행을”을 “직무수행에 내

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행위, 직무수행을”로 하고, 같은 란 가목 중 “화생방·탄약·폭발물·유류”를 “강하 및 상륙 임무, 고압의 특수전류·화생방·탄약·폭발물·유류”로, “수사·재판, 검문활동”을 “수사·재판,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1항의 계호업무, 검문활동,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, 주요 인사경호”로, “인명구조·재해구호”를 “산불진화,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, 인명구조·재해구호”로 하며, 같은 란 나목 중 “인명구조·재해구호 등”을 “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, 범죄예방·인명구조·재산보호·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다목 중 “화학물질·발암물질”을 “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, 화학물질·발암물질”로 하며, 같은 란 라목 중 “주요 인사경호”를 “방제작업, 불법어업 지도·단속,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01조제1항의 계호업무, 주요 인사경호”로 하고, 같은 호 2-2의 기준 및 범위란 중 “전투력”을 “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, 교육훈련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행위, 전투력”으로, 같은 란 중 “체력검정을”을 “체력검정,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”로 하고, 같은 호 2-8의 기준 및 범위란 나목 중 “급성으로 질병”을 “질병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2명 이상 사망수당	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. 아래 해당하는 사망자가 2명인 경우 1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 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, 재일학도의용군인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 · 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2)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(재해사망군경) 및 제2호(재해부상군경)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 로 판정된 사람 나.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더하여 지급한 다.	274
------------------	---	-----

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가목 및 비고 1을 다음과 같이
한다.

5. 2명 이상 사망수당	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. 아래 해당하는 사망자가 2명인 경우 1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(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재일학도의용군인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2)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(재해사망군경) 및 제2호(재해부상군경)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	274
비고 1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제2호의 수당 중 둘 이상의 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월 지급액이 많은 수당을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		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별표 1 제2호의 2-1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질, 위험직무의 종류,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</u>
제8조(등록신청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8조(등록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된 군인인 경우 5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된 경찰·소방공무원인 경우

제23조(수당) ① (생 략)

② (생 략)

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고령수당으로 지급한다.

제10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국가보훈처장(제10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10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3조(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제1항제2호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2호에-----

-----.

제10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-----

--보훈심사위원회와 제102조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 부칙

제10조(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(생 략)

구분	지급 대상	월지급액 (천원)
1. ~ 4. (생 략)		
5. 2명 이상 사망수당	법 제12조제1항제2 호·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 서 가. 사망자(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 군경, 4·19혁명 부상자 및 특별 공로상이자가 해 당 상이 외의 원 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다. 이하 같다)가 2명인 경우	274

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 부칙

제10조(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(현행과 같음)

구분	지급 대상	월지급액 (천원)
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2명 이상 사망수당	----- ----- ----- ----- 가. 아래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2명인 경우 1) 전상군경, 공 상군경, 4·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(상이등급 7급 으로 판정된 사 람 중 해당 상 이 외의 원인으 로 사망한 경우 는 제외한다), 재일학도의용군 인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 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2) 보훈보상자 법 제2조제1항 제1호(재해사망 군경) 및 제2호	274

				(재해부상군경) 중 상이등급 6 급 이상으로 판 정된 사람 나. (현행과 같음)
나. (생 략)				
6.~8. (생 략)			6.~8. (생 략)	
비고			비고	
1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당 중 둘 이상 의 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월 지급액이 많은 수당을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			1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「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2 호의 ----- ----- -----.	
2. (생 략)			2. (현행과 같음)	
② (생 략)			② (현행과 같음)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15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31